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5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사 스트레스 해소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및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명확화(안 제5조제2항)

나. 사용료 산정기준 신설(안 제8조, 별표)

다. 용어의 명확화 등 용어 정리(안 제4조, 제6조, 제7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31조(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6. 3. 5.~2026. 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마포구에 주소를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사 스트레스 해소 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주민참여를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참여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인식개선”을 “인식 개선”으로 한다.

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사용료) ① 이용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③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용료 산정기준(제8조 관련)

□ 사용료

구 분	사 용 료		비 고
노래방	20분 (최소시간)	2,000원	※ 추가 사용 희망 시 명시된 시간·금액 동일 적용
	30분	3,000원	
	40분	4,000원	
	50분	5,000원	

※ 노래방 외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대상은 <u>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</u> 사람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<u>서울</u> <u>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--</u> -----.</p>
<p>제5조(지원사업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(지원사업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</u> <u>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사 스트</u> <u>레스 해소 시설(이하 “시설”</u> <u>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
<p>제6조(구민참여) ① 구청장은 가 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 진 시 <u>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</u>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, 사례발표 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6조(구민참여) ①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</u> <u>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참여를 -</u>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 <u>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</u> <u>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</u> <u>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----- ----- <u>인식 개</u> <u>선</u>----- ----- -----.</p>

② (생략)

<신설>

제8조 ~ 제11조 (생략)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용료) ① 이용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③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

제9조 ~ 제12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

[별표] <신설>

사용료 산정기준(제8조 관련)

□ **사용료**

구분	사용료		비고
노래방	20분 (최소시간)	2,000원	※ 추가 사용 희망 시 명시된 시간·금액 동일 적용
	30분	3,000원	
	40분	4,000원	
	50분	5,000원	

※ 노래방 외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
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정우철 (☎ 3153-8924)